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단지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기준 상으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임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함
 -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며,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함¹⁾
- 현행 양형기준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됨(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이 우선 설정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험사기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임
 - 양형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²⁾
 - 이처럼 보험사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임

1)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함. 다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

2) 양형위원회 보도자료(2024. 4. 29), "양형위원회 4/29(월) 제131차 회의 결과"

○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죄(제8조 제1항 제1호), 상습범(제9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제11조 제1항)의 경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하되,³⁾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⁴⁾
 -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일반 사기죄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조직적 사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수한 유형의 사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범죄는 일반사기로 보되,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표 1〉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유형	내용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내용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주: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징역형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음
 자료: 양형위원회, 「2023 양형기준」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새롭게 금지되었으나(2024. 8. 14 시행 예정), 아직 처벌 및 양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임
 4) 제2024-13호 전문위원 업무보고(<https://sc.scourt.go.kr/sc/krcs/board/BoardViewAction.work?gubun=3¤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9>)
 5) 보험사기의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와 징역형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벌금형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어 있음

-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임
 - 법원 판례들에 적시된 양형 이유에 의하더라도,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며 이것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임
 -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 태양이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거나, 일반 사기죄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 하나로 보아 가중요소로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⁶⁾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양형기준상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정하고 있는데,⁷⁾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공영보험의 재정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로 다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기준에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음

6)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의료법 제22조 제3항) 이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의료법 제88조 제1호)

7) 문서 위조·변조죄, 통화 위조·변조죄, 업무방해죄 등의 경우에 해당됨

-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만 적용되며, 위와 같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사기의 경우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높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⁸⁾ 양형기준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임
- 이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검찰 사건처리기준은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두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향후 검찰 사건처리기준상으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8)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56.8%이며,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이 39.6%였음(백영화(2024. 4. 15), 「최근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 『KIRI 보험법리뷰』, 제28호)